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3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294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2. 12. 2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294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8. 체결한 매매계약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7.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20. 4. 9. 접수 제2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4. 9. 접수 제41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C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각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바, 위 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6행의 '피고가'부터 7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그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였다거나,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였다는 등과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오현순